

家族生活에 대한 住宅의 社會學的 및 適合要求 ③

— 要求들

趙 英 武(建築家)

3. 要求들

- 3-1 占有領域의 專用要求
- 3-2 이웃들과 對面한 內密 및 靜肅要求
- 3-3 尊嚴要求
- 3-4 家族끼리의 內密 및 會合要求
- 3-5 家族生活樣式에 대한 適合要求
- 3-6 面積들
- 3-7 便利性 따위의 차례로 논하고자 한다.

3. 要求들

개인들 및 가족들의 심리적 및 사회적 요구들에 관한 주택적합요구는 적어도 1950년 전후만해도 연구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그 때문에 주택설계자들이 새로운 배치설계들을 효과있게 구상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들의 많은 부족을 이어 받아야했었다.

여기 要求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要求들이란 개인과 가족에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킨다.

아직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관한 주택적합요구들의目錄을 과학적으로 작성케 하는 종합연구가 없다. 그러나 과거 프랑스 사회학자 송바르·드·로오우(Chombart de Lauwe)와 그의 연구팀에 의하여, 또 그 보다도 최근에 프랑스사회학회에 의하여 실시된 특정표본들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어떤 수치를 결드린 목록을 작성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1960년대의 프랑스인들의 요구들을 문제삼은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통계적일 것이므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요구들을 나열한 순서는 별다른 뜻이 없다.

3-1. 占有領域의 專用要求

이것은 짐승들의 보금자리들에서 관찰되고 있듯이 일종의 領土專用과 비슷한 개념이며, 어떤 가족이 마음대로

로 그 가족의 건축 또는 비건축의 영역을 전용한다는 필요이다.

점용영역의 전용요구는 여러가지 관점들을 가진다:

우선, 이것은 점용자가 원한다면 아무한테도 구매받지 않고 건축 또는 철거할 수 있다는, 점용자가 완전히 그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주거형식인 경향에 다분히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거지의 소유권취득을 가져 온다:

가족들에 의한 공간정복은 가구, 장식들, 수단들과 커튼들, 칠들, 조명양식 따위 무한한 수단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 요소들이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의 사회심리적 특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가능성을 반영한다.

이 요소들이 특히 공간들에 대하여 형식적 또는 협약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그래서 주택일부분에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마련한 공간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內密水準과 形式化水準은 침실들과 욕실들이 거실 또는 사롱과 같이 협약적인 표현의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 같을 수가 없다.

3-2. 이웃들과 對面한 內密 및 靜肅要求

이것은 점용영역의 전용이 내밀성과 정숙성을 확보시킨다는 뜻에서 전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으나, 결코 중복되지 않는다.

가족은 이웃들과 대면하는 상호적인 內密性을 필요로

한다: 어느 가족도 그의 집안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 이웃들에게 발각되고 또 상호적으로 이웃집안들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감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쪽으로 이웃집안들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달된다는 가능성은 역으로 저쪽으로 이쪽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달된다는 가능성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 内密(privacy)의 필요는 계단참위 또는 공동통로안의

- ① 소리들,
- ② 視線들,
- ③ 만남들 따위에 적용된다.

이 내밀의 필요에 관한 서술은 정숙의 필요와 분간하기 어렵다: 누구나 이웃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대하여 불평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요구들의 소음도를 밝혀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부터 구속감들이 연유하는 것일까? 지나친 소음에 대한 불안, 시끄러운 이웃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이쪽이 이웃들을 엿들 수 있듯이 이웃들이 이쪽을 엿듣는다는 감정 때문에 생겨 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계단, 환기 또는 창으로 스며 드는 냄새는 냄새만이 아니라 이웃들에서 생산된 냄새들로 간주된다: 이런 냄새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웃들이 냄새들을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절대적인 요구가 되어 버린다.

직접 視線들에 의한 내밀의 감소는 아직 조사연구가 덜된 탓인지 오늘날 상대적으로 종속적이다. 이와 달리 누구나 30m 정도의 거리를 사이에 둔 대면은 꽤찮다고 보통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버그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웃사람들과 같이 있고 또 보기를 원한다. 이웃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누구나 그들을 무시할 수 있다. 어떤 범위안과는 달리 이런 사항은 인간이 이웃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關係들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음향에 의한 내밀성의 감소는 오늘날 기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모든 조사들은 방음절연이 지상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에 관한 충족의 요인들 가운데서 음향적정숙은 거주면적의 요구 다음에 자리잡는 제 2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웃들의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不便은 방음절연의 질 뿐만 아니라 占用密度와 占用樣式, 어린애들의 數들, 점용자들의 재산 따위에 좌우된다; 하나 이상의 어린애들을 가진 가족들이 어린애가 없거나 단 하나뿐인 가족들보다도 그 이웃들에게 현저히 방해가 될 것이다. 하나 이상의 어린애들을 가질 때는, 불편은 어린애의 수와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수많은 가족들이 살 대규모주택들간의 절연은 각별히 심중하여야 한다. 나이 많은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소음에 더 예민하다고 여겨지

지 않는다.

아무래도 윗층의 이웃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중소음들로 말미암은 불편이 아랫층의 이웃들에 의한 불편보다도 더 크다고 관찰되었다. 이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적적설명을 가할 길 없지만, 누구나 공중소음과 충격소음이란 두가지 전달경로들의 동시출현때문에 이웃사람들의 지각이 높아진다는데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문제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近隣不便들이 두 세대가 배타적일 때 더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왜냐하면 예로서 잘못 절연된 연립주택들에 거주하고 있는세대들사이의 不便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아랫층과 윗층에 동시에 이웃들을 가지는 입주자들은 단지 윗층의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만이 지장을 받고 있다. 걷는 사람들, 배관 또 배수의 소음 따위는 어느 관점으로나 실제로 지장이 적다.

이원적인 근린의 불편은 옛날의 관찰과 비교되고 있다. 수많은 이웃들이 간파할 때, 점용자들은 그 증오감을 이웃사람들에게보다도 오히려 건축인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두 가족들로 한정된 근린의 경우에는, 불편의 책임은 건축시공의 결함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사람들의 부당행실에 휩사리 낙착된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불쾌한 근원이 더 인격화되어 있고 또 관계된 인간이 더 이웃이고 그래서 더 얼켜 있는 것보다도 불쾌한 물리적현상이 한층더 나쁘게 받아드려지고 있다.

어떤 저소득사회직업계층들은 근린사회에 대한 그들의 소속을 의식하기를 더 소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소음에 관한 그들의 허용도가 더 높았던 사실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간혹 과밀거주 밀도, 야간이 될지 모르는 어떤 노동시간들과 차운행 따위가 노동자들이 거주할 주택들의 방음절연들을 각별히 심중히 처리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内密要求의 또 하나의 관점은 누구나 보기 싫은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귀찮은 치들을 집밖에서 억제하는 현판이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로 통로형식들과 반대되는 금지구역들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

1960년 전후에는, 계단참을 공유하는 4호의 주택들이 단 2호의 것보다도 좋고, 주택은 근린과의 사회관계들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들은 근린 때문에 강요된 이런 사회적관계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 또 일단 강요된 사회적관계들이 확립되면 그때 가서 인적이 드물어 지는 것을 바랄 수 없게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웃사람들의 도움은 필요한 경우나 환영할 만한 것이며, 사회적관계의 필요들은 거기에 한정된다.

나이 많은 독신자들이 거주할 1개실형 주택들에 관한 화란의 어떤 조사는 그 입주자들의 불충족을 아주 명백히

결론지였었다. 그러나 하나의 사적인 내밀한 공간의 필요는 영원한 것이고 또 전기 조사의 관찰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출입구와 먼 예비거실공간을 배치한 아파아트 점용자들에게 관한 조사가 주요거실보다 더 내밀한 거실공간배치가 주부들에게 제공하는 유익함을 증명하였었다. 무엇보다도 주요거실보다도 더 간단히 친구들을 대접한다는 가능성이 평가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었다.

단독주택 주변 뜰안의 내밀성의 미묘한 감각도 이와 비슷하다: 집앞의 작은 前庭이 어떤 전시효과 또는 신사도를 충족시키고, 집뒤의 内庭 또는 정원이 내밀해진다.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정원형식과 그 행태가 달라질 것이다. 영국에서는 여간해서 담장이 없으며, 그래서 앞뒤의 집뜰의 대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누구나 행태와 그 반대의 행태를 창조하는 것이 담장이라는 고전적디렘마가 부과된다.

3 - 3. 尊嚴要求

어떤 가족이나 밖에 들어내 보여도 좋다고 믿어지는 그 가족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려고 한다.

이 가족상의 노출은 市区的 선택에 의하여, 또 주소에 의하여 초래된 효과에 의하여 비롯된다.

이러한 가족의 상의 노출은 가로의 양상, 건물 및 그 접근로의 양상, 저명도들 따위에 의하여 연속된다.

개인주택에서는, 눈에 띄어 거처할 수 없으나, 전시효과를 노려서 장식하는 前庭을 가꾸는 것이다.

계단과 승강기의 等級이 다음을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個室을 꾸미는 것인데, 그 개실은 별로 찾아 오지 않는 방문객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빈틈없이 손질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 대단히 강력한 것이 본질적으로 신사도인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3 - 4. 家族끼리의 内密및 會合要求

공개장소들이 붐비는 것과 달리, 타인들에 대한 점용 영역의 전용 및 내밀요구가 가족 그 자체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가족의 각구성원마다 제각기 혼자 거처할 수 있는 개실 또는 구석을 점용하여야 한다: 나의 코너, 나의 작은 코너, 이것이 구애 받지 않은 대화에 의한 조사에서 아주 빈번히 추출되고 있다.

나의 전용의 코너의 필요는 간혹 중복되는 내밀요구와는 다르다: 이 전용은 가족의 주부코너, 또는 공용실안의 조부모의 코너를 문제삼을 때 제기된다.

내밀요구는 회합요구와 반대된다. 가족개념은 회합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주택은 이 가족적회합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영구적인 회합은 우리 인간

들에게는 도저히 찾기 어렵다.

가족적조화를 위해서는, 철이 드는 나이가 되면서 부터 또는 어쩌면 빠를수록 좋은데, 가족의 각구성원이 혼자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어른을 위해 필요하며 또 이는 부엌, 거실, 침실을 이용하여 아주 쉽게 실현된다. 또한 이 방들이 나와 할것없이 제각기 거기에서 일할 수 있거나 거기에서 쉴 수 있게끔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들에 더 한층 중요한 것이 있다: 사춘기가 되면서 부터 그 성인은 가족 안의 타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 그에게 기성성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독립성을 집안에서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침실들이 거실과 침실 겸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구성원의 内密과 전구성원의 再結合과는 달리, 가족단위안의 보다 작은 소단위, 즉 양친끼리, 아들들끼리, 딸들끼리, 소단위끼리의 회합의 필요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요구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주택설계자들에게 이미 어려운 문제들을 안겨 주고 있다.

3 - 5. 家族生活樣式에 대한 適合要求

앞서 누구나 기능적증명에 의하여 생활양식을 서술할 수 있다고 논하였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적합요구는 면적, 개실들의 분배, 그 개실들의 설비시설 따위가 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이 기능적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거처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고, 그리고 적당한 가구들과 설비시설들을 장치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적합의 필요는 내부공간에 대한 심리적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적합의 필요는 내부공간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는 기능들을 近接시키고 또 遠離시킨다는 강제성들이 존재한다.

만약 시끄러움이 침실들로부터 부엌과 거실을, 또 공기순결요구가 거실과 부엌에서 변소를 원격시킬 것을 요청한다면, 이것은 가정주부가 어린애들과 학교다니는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장소들을 배치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같은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침실들과 화장실을 근접시키기를 요청하는 것도 역시 생활양식이다.

이것 저것 편중하기를 피하여 여러 다른 개실들간에 기능들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개실들사이에 기능들을 아주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 6. 面積들

생활양식에 대한 적합요구는 전체면적에 관하여 고려 하겠끔 유도한다:

3-6-1. 全体面積, 面積基準들

너무 좁은 전체면적은 분리와 결합의 가능성들을 동시에 주지 않아 입주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족들 내부의 양친과 자녀들간의 행동들에 관한 연구, 또 주택에서의 다소 높은 층주의 행태에 관한 좀 더 통계적인 또 하나의 연구, 이 두가지 일련의 연구작업들이 각 가족에 필요한 주택면적을 연구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두가지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고 있다:

① 그 이하로서는 점용자들의 心身의 건강을 심히 교란시킨다는 것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줄일 수 없는 病理的基準;

② 그 이하로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균형을 보장할 수 없는 限界基準.

1인당 몇m²로 측정되는 病理的基準은 8~12m² 이고 또 限界基準은 12~14m²에 도달하며, 1인당 16m² 이하로 줄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5인가족이면 80m²의 면적이 바람직하다. 이 면적 수치들은 물론 어떤 특정 수치들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과 그 설비시설의 물질적 質이 좁은 면적들을 한층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수치들이다.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연령도 역시 면적의 필요를 좌우한다. 공간의 필요가 사회계층과 더불어 다양하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한 예로서, Chombart de Lauwe는 프랑스 Bordeaux 지방에서 6~7인의 노동자 가족들이 4 個室의 주택형에 만족하고 있을지라도 관리적 가족들은 똑같은 주택형에 4~5인이상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었다. 만약 이 기준 수치들이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면, 면적기준개념은 현실성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가족단체협회(U IOF)의 Cologne 회의에 의하여 추천된 면적들과 Chombart de Lauwe의 연구작업들이 평가한 면적들이 전기의 결론들과 일치하였다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록(II)에서 이른바 Cologne 표준기준이라고 불리는 UIOF 추천기준들, 프랑스 HLM 주택의 1969년 면적 표준기준들, 그리고 UIOF 면적기준과 거의 혼동할만한 이른바 과거의 HLM 주택의 1947년 면적표준기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살만한 m²의 수치는 이 주택들을 점용할만한 가족들의 인원수를 가지고 전체면적에서 부터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1인당 최소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무수한 가족들인 것이다.

3-6-2. 個室들의 면적

인간은 각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면적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열중하였었다. 이것이 수많은 조사연구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각기능마다 필요한 면적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기능들이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개실의 최소면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양식과 관계없는 면적들 따위를 연구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또 생활양식은 개실들속에, 즉 空間속에 기능들을 분배하는 것에 의할뿐 아니라, 生活時間, 즉 時間속에 기능들을 분배함으로써 각색된다. 그리고 전체면적들속에 작용하는 擴散기능들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면적들을 배당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특기한다.

확산기능들은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과 함께 동시에 수행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표준기준들속에서는 서비스의 필요한 면적들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최신자료가 거의 연구되어 있다.

3-6-3. 線狀寸數들.

개실 안에서 수행하기 원하는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게 막는 것은 비단 면적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가구들의 치수와 개실의 치수가 너무나 차이난다든가, 창문들과 방렬기들의 배치가 벽면에 필요한 가구들을 설치할 수 없게한다든가, 적당한 가구들을 방안에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설계 자체가 개실에 배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구를 방안에 놓을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이 좋다.

3-7. 便利性

우리 생활양식은 갈수록 여러가지 쾌적요소들의 이용을 전제하고 있다.

그 최소기준의 표현은 간혹 사회주택을 정하는 건축법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소기준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는 개별히 평가된 다음 추가사항들을 시사할 수 있다:

① 온 가족의 동시적인 화장 및 용변을 가능케 하고 또 누구나 제각기 하나의 위생기구와 그 장소를 가져서 보건 위생의 내밀성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보건위생의 기구들;

② 3~4층의 승강기;

③ 각주택마다 전화기. (1977. 8. 20)